

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[별지 서식]

(앞쪽)

제 호
군사망사고 진상규명 조사관 신분증
사 진 3.5cm×4.5cm 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 영한 것)
성 명
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

60mm×90mm[백상지(150g/㎡)]

(색상: 하늘색)

(뒤쪽)

군사망사고 진상규명 조사관 신분증
소 속: 성 명: 생년월일:
위 사람은 「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」 제19조제3항·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에 따라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. 년 월 일
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직인
1. 이 증은 앞쪽에 기재된 사람에게만 유효합니다. 2. 이 증은 앞쪽 또는 뒷쪽에 적힌 신분에 변경이 있으면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. 3. 이 증을 제시받은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4.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.